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81호)

- '99. 7. 15.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99. 6. 18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99. 6. 30
- 다. 상정일자 : '99. 7. 15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90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운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12.13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서초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교통행정과의 과징금처분 관련자료를 근거로 교통지도과에서 징수 결정을 하고 있으며,
- 1999년도 본 예산서상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수입이 10억742만 5천원 계상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억614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1999년 4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 포함 8871만5500원 수납하였음.
- 상위 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강제 징수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